

1. 개정이유

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, 「하천법」이 개정(법률 제19667호, 2023. 8. 16., 시행)됨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(안 제19조의4 신설)

- 1)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법인의 범위를 사립학교 법인,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, 한국농어촌공사로 구체화함

나. 하천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정비(안 제13조의2 신설, 제40조제3항 개정)

- 1)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는 해당 지방하천명,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, 구간의 길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정하고자 함
- 2)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(2020. 4. 7, 법률 제17219호) 개정에 따라 ‘감정평가업자’를 ‘감정평가법인등’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)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
2.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(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)
3.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

제19조의4(공공목적 수행하는 법인 등) 영 제44조제1항제7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(사립학교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
3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(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제40조제3항 본문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)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</u> <u>2.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(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)</u> <u>3.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</u>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4(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등) 영 제44조제1항제7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(사립학교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u> <u>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</u> <u>3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</u>

제40조(폐천부지등의 교환·양여 신청) ①·② (생략)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·지방환경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·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감정평가업자</u>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④ (생략)	<u>리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(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</u> 제40조(폐천부지등의 교환·양여 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감정평가법인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